

### 3.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2-149號 1992. 11. 5

#### 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가. 수도권에서 대규모(100만<sup>m</sup>2 이상)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보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통시설, 용수공급시설,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

나. 개발유도권역·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의 공장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함.

-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가공공장(천연조미제품, 장류, 식물성유지 제조공장) 및 축분비료공장의 연면적 1,000<sup>m</sup>2이내 신·증설을 허용
- 도축장 통폐합사업에 따른 연면적 5,000<sup>m</sup>2이내의 도축장 신·증설을 허용
- 기존공장의 창고 및 사무실을 연면적 500<sup>m</sup>2이내에서 증설을 허용
- 자연보전권역의 지역특화업종인 도자기공장은 연면적 3,000<sup>m</sup>2까지 증설을

#### 허용

다.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서 실시하는 택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설치사업은 종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만<sup>m</sup>2까지 허용하던 것을 15만<sup>m</sup>2까지 확대하여 허용

라. 개발유보권역에서는 입학정원 50인이내의 소규모 대학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며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

2.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 : 수도권계획과 전화번호 503-734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